

울산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가단1082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상필, 강형철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훈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C와 피고 A 사이에 2019.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122,782,238원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122,782,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C와 피고 B 사이에 2019.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61,391,119원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61,391,1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운영하는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은행
①	2018. 4. 12.	E	68,000,000원	2019. 4. 12.	F은행
②	2018. 9. 20.	G	85,000,000원	2019. 9. 19.	F은행

나.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무렵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 제출하고 합계 1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20. 2. 24.경 신용보증사고(H연합회 부도등록)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9. 9.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55,410,537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C는 2019. 4. 24. 피고들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울산지방법원 2019. 5. 17. 접수 제71554호로 피고 A 지분을 3분의 2, 피고 B 지분을 3분의 1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F은행으로 하는 2018. 1. 29.자 채권최고액 16억 2천만 원, 2018. 4. 17.자 채권최고액 5억 5천만 원, 2018. 8. 13.자 채권최고액 4천 2백만 원, 2018. 8. 29.자 채권최고액 9천 8백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2019. 5. 17.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F은행, 채권최고액 8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F은행에 C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 대지급금, 손해금 등 합계 184,173,358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는 2018. 4. 12. 및 같은 해 9. 20. F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4. 24.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7, 1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들(① C가 2019. 1. 29.경 I보험으로부터 11,200,000원을, 2019. 5. 27.경 J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9. 11. 30.까지 부가세 3,900,600원을 체납하였다. ② C가 2019. 7. 31. 울산 북구 K 토지 및 건물을 L에게, 2019. 8. 9. 울산 북구 M 토지 및 건물을 N에게 각 매도하였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 일정한 사유로서 ‘주채무의 이행을 위반한 때(제1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제2호)',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제5호)',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제6호)' 등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제10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에 특별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밝힌 것으로서, 그 취지는 주채무 자체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유, 즉 주채무자인 기업이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미리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89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2. 24. C가 H연합회 부도등록의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2020. 2. 24.경 C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 4. 24. 체결되었다.

②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24.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최초 보증기한은 2019. 4. 12., 2019. 9. 19.까지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전인 2019. 4. 9. C와 이 사건 ①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 9. C와 이 사건 ②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이는 C의 신용상태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C가 위 ①신용보증약정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C가 운영하였던 D의 2018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4,440,946,886원(그 중 유동자산은 1,377,975,036원이다), 부채총계가 2,596,840,134원(유동부채는 47,496,956원으로 거의 대부분 장기차입금이다), 매출액이 1,199,266,363원, 영업이익이 146,259,954원, 당기순이익이 65,372,767원이고, 2019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4,360,758,492원(그 중 유동자산은

1,339,368,288원이다), 부채총계는 2,558,178,155원(유동부채는 8,834,977원으로 거의 대부분 장기차입금이다), 매출액이 588,179,736원, 당기순이익이 29,420,655원으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2019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축소된 측면은 있으나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도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

별지